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90호 2021. 5. 4.(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1-59호	군도21호선(노량~덕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
남해군 고시 제202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
남해군 고시 제2021-62호	군계획시설(문화공원:동대만생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4
남해군 고시 제2021-63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7
남해군 고시 제2021-64호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9
남해군 고시 제2021-67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2
남해군 고시 제2021-68호	군관리계획(교통시설: 창선단항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3
남해군 고시 제2021-70호	남해군관리계획(엔스테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6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575호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
남해군 공고 제2021-579호	남해군 금고 지정 공고	30
남해군 공고 제2021-582호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공고 ·	31
남해군 공고 제2021-60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 · 사용) 허가 공고	33
남해군 공고 제2021-60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 · 사용) 허가 공고	34
남해군 공고 제2021-609호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35
남해군 공고 제2021-618호	공시송달 공고	39
남해군 공고 제2021-619호	공시송달 공고	41
남해군 공고 제2021-640호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인가 공람 · 공고	43
남해군 공고 제2021-644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남해군 공고 제2021-64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52
남해군 공고 제2021-655호	남해군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54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과장)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갈현 내산 소규모수도 노후화 시설개량공사에 따른 상수도관매설(관 인입)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1번지(내산교)
6. 점용면적 : 1㎡
7. 점용기간 : 2021. 4. 16. ~ 영구점용

남해군 고시 제2021 - 59호

군도21호선(노량~덕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노량리 일원에 위치한 구 국도19호선의 군도이관에 따른 「도로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군도	21	군도 21호선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노량리	44,267	설천면 노량리 443-20	설천면 덕신리 1772-13	노량리	2.2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구 국도19호선 군도이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기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기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5. 관련도면 및 열람장소

○ 실음생략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

남해군 고시 제2021 - 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 등(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환경녹지과장)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국가생태문화탐방로(남해바닷길) 조성사업에 따른 제방길 산책로 조성 및 안내판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491번지 외 13필지
6. 점용면적 : 767m²
7. 점용기간 : 2021. 4. 22. ~ 영구점용(공사기간: 24개월)

남해군 고시 제2021 - 62호

군계획시설(문화공원:동대만생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1-9호(2021.01.12.)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문화공원)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문화공원: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 명 칭 :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26,81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25,737	26,816					
1	창선면	상신리	1	1	답	8,051	8,010	남해군				
2	창선면	상신리	1	2	도로	293	293	남해군				
3	창선면	상신리	1	3	답	281	281	남해군				
4	창선면	상신리	1	4	답	458	458	남해군				
5	창선면	상신리	1	5	답	2,017	1,506	남해군				
6	창선면	상신리	1	7	답	13,989	8,008	남해군				
7	창선면	상신리	1	8	답	325	325	남해군				
8	창선면	상신리	1	9	답	1,133	1,133	남해군				
9	창선면	상신리	1	10	도로	76	76	남해군				
10	창선면	상신리	1	13	답	580	580	남해군				
11	창선면	상신리	1	14	도로	12	12	국토교통부				
12	창선면	상신리	1	15	답	108	108	남해군				
13	창선면	상신리	1	16	답	28	28	남해군				
14	창선면	상신리	1	17	도로	201	6	남해군				
15	창선면	상신리	1	19	답	36	36	남해군				
16	창선면	상신리	1	23	답	2,540	286	남해군				
17	창선면	상신리	1	29	답	14	13	남해군				
18	창선면	상신리	342		답	617	617	손*희	포항시 남구 오천읍			
19	창선면	상신리	342	1	답	172	172	손*희	포항시 남구 오천읍			
20	창선면	상신리	343		답	2,525	2,525	이*철	진주시 도동천로			3/4
								이*자	진주시 신안들말길			1/4
21	창선면	상신리	343	1	답	192	192	장*기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2	창선면	상신리	344		답	983	983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3	창선면	상신리	344	1	답	26	26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4	창선면	상신리	347	1	제방	332	85	국토교통부				
25	창선면	상신리	347	2	잡종지	244	244	남해군				
26	창선면	상신리	347	4	잡종지	27	27	남해군				
27	창선면	상죽리	10	2	잡종지	90,477	786	기획재정부				

남해군 고시 제2021 - 63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17-123호(2017.11.23.)로 최초 결정된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23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신전문화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주차장	이동면 무림리 249번지 일원	35,421	감)35,421	-	남해군 고시 제2017-123호 (2017.11.23.)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주차장	폐지	○ 신전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및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적어 당초 결정된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신전공원	문화공원	이동면 무림리 산166-1번지 일원	18,006	감)18,006	-	남해군 고시 제2017-123호 (2017.11.23.)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신전공원	폐지	○ 신전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보상이 어렵고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당초 결정된 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원 폐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일괄 폐지

남해군 고시 제2021 - 64호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 공고 제2021-188호(2021.02.09.)로 공람·공고된 남해군 서변리 24-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23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해군청	군 청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16,069	증)2,326	18,395	경상남도 고시 제391호 (1993.11.2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남해군청	○면적증가(증2,326㎡) A=16,069㎡→18,395㎡	○ 공공청사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공공청사 부지 일부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

2.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064	남해읍 북변리 88-9	남해읍 아산리 924-1	일반 도로	-	건고 제406호 (1973.10.12.)	도시 지역
변경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064	남해읍 북변리 88-9	남해읍 아산리 924-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230	남해읍 서변리 46-1	남해읍 서변리 187-8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 지역
변경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10	남해읍 북변리 139-3	남해읍 서변 187-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9	8~12	국지 도로	651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 지역
변경	소로	2	39	8	국지 도로	646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2	8	국지 도로	116	남해읍 서변리 65-44	남해읍 서변리 69-1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 지역
변경	소로	2	42	8	국지 도로	301	남해읍 아산리 396-6	남해읍 서변리 69-1	일반 도로	-		
폐지	중로	2	7	15	국지 도로	171	남해읍 북변리 139-3	남해읍 서변리 46-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20-5호 (2020.01.09.)	도시 지역
폐지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175	남해읍 아산리 396-6	남해읍 서변리 65-4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20-5호 (2020.01.09.)	도시 지역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호선	중로2-2호선	○ 구역조정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소로2-20호선	소로2-20호선	○ 노선연장 - L = 230m → 410m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소로2-39호선	소로2-39호선	○ 도로폭 및 연장 변경 - B = 8~12m → 8m - L = 651m → 646m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소로2-42호선	소로2-42호선	○ 노선연장 - L = 116m → 301m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중로2-7호선	-	○ 폐지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폐지
중로3-11호선	-	○ 폐지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폐지

남해군 고시 제2021 - 67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120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남해군 홈페이지 참조

남해군 고시 제2021 - 68호

군관리계획(교통시설: 창선단항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0-144호(2020.8.19.)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창선단항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16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관리계획(교통시설:창선단항주차장) 조성사업
- 명칭 :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21,4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 및 건설교통과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4,446	21,419						
1	남해군 창선대벽리	168	1	답	846	846	남해군					
2	“	168	2	답	575	575	남해군					
3	“	167	2	답	542	542	남해군					
4	“	167	1	답	2,000	2,000	남해군					
5	“	139		답	1,379	1,379	남해군					
6	“	141	1	답	228	228	남해군					
7	“	141	2	전	774	774	남해군					
8	“	166		답	764	764	남해군					
9	“	167	3	답	116	116	남해군					
10	“	152		임	2,357	2,357	남해군					
11	“	153		전	397	397	남해군					
12	“	160		답	73	73	남해군					
13	“	154		답	1,048	1,048	남해군					
14	“	155		답	555	555	남해군					
15	“	156		전	1,025	1,025	남해군					
16	“	158		답	1,150	1,150	남해군					
17	“	159		답	278	278	남해군					
18	“	161		답	340	340	남해군					
19	“	8		답	499	499	남해군					
20	“	8	1	답	841	841	남해군					
21	“	7		답	294	294	남해군					
22	“	6	7	답	162	162	남해군					
23	“	162		답	732	732	남해군					
24	“	6	41	도	2,025	837	남해군					
25	“	산 9	6	도	1,928	89	남해군					
26	“	163		답	270	270	남해군					
27	“	164	2	답	194	194	남해군					
28	“	164	1	답	681	681	남해군					
29	“	165		답	1,379	1,379	남해군					
30	“	산 9	29	임	571	571	남해군					
31	“	168	3	임	423	423	남해군					

남해군 고시 제2021 - 70호

남해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 1. 위 치 : 남면 평산리 558-2번지 일원
- 2. 면 적 : 33,182㎡
- 3. 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 4. 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행지침 : 실음생략
- 5. 관계도면 : 실음생략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33,182	33,182		
신설	-	엔스태이	특정	남해군 남면 평산리 558-2번지 일원	-	증)33,182	33,18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m ²)	결정사유
신설	-	남해군 남면 평산리 558-2번지 일원	33,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및 유흥시설 조성을 통해 남해군 동서지역 균형발전 및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33,182	33,182	100.0	
특정시설용지	-	증) 19,501	19,501	58.8	
숙박시설	-	증) 13,949	13,949	42.1	
유흥시설	-	증) 5,552	5,552	16.7	
녹지용지	-	증) 10,918	10,918	32.9	
기타녹지	-	증) 10,918	10,918	32.9	
공공시설용지	-	증) 2,763	2,763	8.3	
도로	-	증) 2,086	2,086	6.3	시설결정 : 2,033m ²
광장	-	증) 677	677	2.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1	141	2,033	-	-	-	-	-	-	1	141	2,033	
중로	1	141	2,033	-	-	-	-	-	-	1	141	2,033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3	국지 도로	141	남면 평산리 555-2	남면 평산리 산 117	일반 도로			

다)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A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B=13m, L=14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1	1	19,501	1-1	평산리 558-2 전	13,949	숙박시설
			1-2	평산리 558-8 전	5,552	유희시설
2	2	78	평산리 556 전		78	기타녹지
3	3	591	평산리 554-5 답		591	기타녹지
4	4	677	평산리 521-2 전		677	광장
5	5	2,554	평산리 556-1 임		2,554	기타녹지
6	6	4,530	평산리 558-5 전		4,530	
7	7	3,165	평산리 561-6 전		3,165	

4)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특정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1-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9층 이하 / 40m 이하	
		배치	주변경관에 순응하며 일조 및 해안경관 확보에 유리하도록 배치(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형태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적절한 스카이라인 유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색채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사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건축선	-	
		1	1-2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주변경관에 순응하며 일조 및 해안경관 확보에 유리하도록 배치(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형태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적절한 스카이라인 유도(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색채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사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4	광장 4-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의 휴게시설 및 사무의 공중 화장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주변경관에 순응하며 일조 및 해안경관 확보에 유리하도록 배치(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형태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적절한 스카이라인 유도(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색채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사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건축선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575호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사전차단과 피해최소화 체계를 구축으로 남해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예찰·방제단의 구성(안 제4조)
 - 나. 병해충 예찰·방제반의 임무(안 제6조)
 - 다.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 설치·기능(안 제6조의 2)
 - 라.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 구성(안 제6조의 3)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5월 7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농업기술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62, 팩스 055-860-3983
이메일 hash999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 055-860-3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 를 “(예찰·방제단의 설치)”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두며” 를 “두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을 둔다” 를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두되, 병해충 방제반은 읍·면별로 구성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병해충 예찰반장은 병해충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읍·면 산업팀장,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병해충 방제반장은 읍·면장이 되고, 반원은 읍·면산업팀장,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공무원, 이장단장 등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찰·방제단” 을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 를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협” 을 “농업협동조합”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무) ① 병해충 예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관련기관 발생 정보 수집 및 전파
2. 병해충 예찰 계획 수립
3. 각종 병해충 예찰 활동 전개
4. 병해충 분포·밀도 조사

- 5. 예찰활동 및 병해충 발생정보 보고
- 6. 병해충 방제업무 지원
- 7. 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자료 제공
- 8. 그 밖에 병해충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병해충 방제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병해충 발생 정보에 따른 약제 선정
 - 2. 병해충의 방제작업 실시
 - 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방제업무 수행
 - 4. 해당 읍면의 실정에 맞는 방제사업 추진
 - 5. 일일 방제사항 보고
 - 6. 그 밖에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예찰·방제협의회 설치·기능)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병해충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 관한 사항
-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예찰반 및 방제반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정보·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제6조의3(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찰·방제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 2. 쌀전업농 남해군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독농가가 추천하는 사람
- 4. 남해군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5. 그 밖에 병해충 예방·예찰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한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반에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 및 방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 (생 략)</p> <p>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 명을 두며, 단장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을 둔다.</p> <p>③ 병해충 예찰·방제반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각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병해충 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p> <p><신 설></p> <p>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p> <p>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예찰·방제단의 설치) (현행과 같음)</p> <p>제4조(구성) ① ----- ---- 두되, ----- ----- -----.</p> <p>② ----- -----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두되, 병해충 방제반은 읍·면별로 구성한다.</p> <p>③ 병해충 예찰반장은 병해충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읍·면 산업팀장,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④ 병해충 방제반장은 읍·면장이 되고, 반원은 읍·면산업팀장,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공무원, 이장단장 등 8명 이내로 구성한다.</p> <p>제5조(운영) ① ----- -----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p> <p>② -----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p> <p>③ ----- ----- 농업협동조합 ----- ----- -----.</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임무) <u>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u> 2. <u>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u> 3. <u>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 단과의 협조체계 구축</u> 4. <u>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u> 5. <u>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u> 6. <u>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u> 7. <u>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u> 8. <u>병해충 진단·분류·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u> 9. <u>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u> 	<p>제6조(임무) ① <u>병해충 예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병해충 관련기관 발생 정보 수집 및 전파</u> 2. <u>병해충 예찰 계획 수립</u> 3. <u>각종 병해충 예찰 활동 전개</u> 4. <u>병해충 분포·밀도 조사</u> 5. <u>예찰활동 및 병해충 발생정보 보고</u> 6. <u>병해충 방제업무 지원</u> 7. <u>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자료 제공</u> 8. <u>그 밖에 병해충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② <u>병해충 방제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병해충 발생 정보에 따른 약제 선정</u> 2. <u>병해충의 방제작업 실시</u> 3. <u>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방제업무 수행</u> 4. <u>해당 읍면의 실정에 맞는 방제사업 추진</u> 5. <u>일일 방제사항 보고</u> 6. <u>그 밖에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예찰·방제협의회 설치·기능)</u> <u>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u>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u> <u>여 예찰·방제단에 병해충예찰방제협의</u> <u>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u> <u>획에 관한 사항</u> <u>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u> <u>검에 관한 사항</u> <u>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u> <u>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u>4. 예찰반 및 방제반의 활동지원에 관한</u> <u>사항</u> <u>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정</u> <u>보·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u> <u>6.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u> <u>실시에 관한 사항</u> <u>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u> <u>및 홍보에 관한 사항</u> <u>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同定) 및 위</u> <u>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u> <u>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u> <u>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u>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7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6조의3(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예찰·방제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 쌀전업농 남해군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독농가가 추천하는 사람 4. 남해군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병해충 예방·예찰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7조(전문인력 등) ① ----- -----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반에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 및 방제원-----.</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1 - 579호

남해군 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남해군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약정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2. 금고(금융기관) 취급회계

구분	금융기관	취급회계
제1금고	농협은행 남해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 특별회계(5종) - 상수도,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청사건립 ■ 기금(6종) -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제2금고	경남은행 남해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3종) - 마늘명품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구분	금융기관명	총점
1순위(제1금고)	농협은행 남해군지부	887.35점
2순위(제2금고)	경남은행 남해지점	787.60점

남해군 공고 제2021 - 582호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과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 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남해군

- * (주소 및 연락처)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행정과 행정팀(☎055-860-311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055-860-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60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 (상하수도과장)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서대천, 보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1287-9번지 외 5필지		
	면적	서대천 : 23㎡ 보천천 : 17㎡ (임시점용 : 30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4. 22. ~ 영구점용(공사기간 : ~ 2023. 12. 31.)		
	목적 및 사유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서대)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1 - 60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 (상하수도과장)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비란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1098번지 일원		
	면적	5.0㎡ (일시점용 : 6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4. 22. ~ 영구		
	목적 및 사유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오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1 - 609호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 나. 사 업 위 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번지 외 41필지
- 다. 사 업 내 용 : 하천정비 L=540m , 교량설치 3개소
- 라. 사 업 기 간 : 2021. 3. ~ 2022.12.(예정)
- 마.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번지 외 41필지 / 10,029㎡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1. 4. 26. ~ 2021. 5. 10.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1년 5, 6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용 지 조 서

진권물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명칭(성명)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대장(당초)	관입			주소	주소	
합계				10,029.0						
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09-1	체	체	1,878.0	820.0	남해군				
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2	체	체	17,941.0	433.0	남해군				
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33-1	묘	묘	1,018.0	163.0	최○조				
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8	답	답	303.0	303.0	남해군				
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8-1	답	답	21.0	21.0	남해군				
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8-2	답	답	288.0	69.0	남해군				
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09-2	답	답	654.0	8.0	남해군				
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0-1	답	답	473.0	110.0	김○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자천로			
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1	답	답	982.0	315.0	김○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1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3-3	답	답	588.0	19.0	박○자	남해군 남해를 입원리			
1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3-2	답	답	397.0	22.0	박○자	남해군 남해를 입원리			
1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3-1	답	답	10.0	2.0	김○순	서울 강동구 전동동	국(강동세무서)		입류(87.02.26)
1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7-2	답	답	379.0	49.0	남해군				
1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7-1	답	답	27.0	27.0	남해군				
1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7	답	답	73.0	73.0	남해군				
1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8	답	답	727.0	395.0	김○표	서울 양천구 신정동			
1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5	답	답	364.0	146.0	최○봉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6	답	답	658.0	382.0	정○관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사북산농협농동조합		근저당권
1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	천	천	44,802.0	2,544.0	국	국(국토교통부)			
2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7	답	답	3,779.0	673.0	이○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8	답	답	1,087.0	307.0	김○홍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19	답	답	104.0	25.0	경상남도				
2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8	답	답	194.0	46.0	국	국토교통부			
2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89-1	도	도	1,690.0	405.0	남해군				
2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9	채	채	287.0	16.0	국	국토교통부			
2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5	답	답	982.0	85.0	최○민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6	답	답	843.0	446.0	박○자	남해군 남해를 입원리			
2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7	답	답	2,284.0	106.0	박○호	충청북도 청양군 오창읍 각리			

용 지 조 서

전관투소하권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영칭(성명)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대경(당초)	권입		잔여	주소		주소	주소	
2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81	1681-1	답	2,324.0	351.0	1,973.0	이○영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95번길 5(경동당보 - 토지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8)	근저당권
3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80	1680-1	답	694.0	41.0	653.0	강○수	울산광역시 남구	동남해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두림리 932 (상주저점)	근저당권, 지상권
3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8		답	235.0	235.0		이○영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95번길 5(경동당보 - 토지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81)	근저당권
3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6-1	1676-3	답	1,296.0	128.0	1,168.0	박○구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5	1675-1	답	714.0	8.0	706.0	손○수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4		답	251.0	251.0		손○수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6-2	1676-4	답	1,478.0	16.0	1,462.0	손○수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3-1	1673-4	답	142.0	17.0	125.0	정○관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서부산농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4(당리동), 광천지점	근저당권
3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9-1	1669-6	답	519.0	180.0	339.0	송○훈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8	1668-1	답	1,464.0	110.0	1,354.0	문○남	부산 시하구 정림동			
3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2	1672-1	답	939.0	234.0	705.0	정○관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서부산농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4(당리동), 광천지점	근저당권
4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1	1671-2	답	1,394.0	50.0	1,344.0	김○숙	진주시 해대동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진주기림금융지점)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근저당권, 지상권
4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1-1		도	292.0	210.0	82.0		남해군			
4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0-3		도	553.0	188.0	365.0		남해군			

남해군 공고 제2021 - 618호

공시송달 공고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사업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1) 사업 명칭 :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사업 목적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4) 사업 시행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경상남도 상주면 양아리 산305-5번지 일원
 - 나. 사업내용 : 사면정비 L=1,330m

2. 의견 제출 기간 및 장소

- 1) 의견 제출기간 : 2021. 4. 26. ~ 5. 10. (14일간)
- 2) 의견 제출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 (☎ 055-860-3296)

3.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현황				비고
					소유자		관계인		
					지적	주소	성명	주소	
계						18인			
1	상주면 양아리	792-1	전	1,4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하*			
2	상주면 양아리	792-3	도	258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김익*			
3	상주면 양아리	산292-1	임	13,190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박필*			
4	상주면 양아리	790-3	전	8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전수*			
5	상주면 양아리	788	전	307	부산시 사하구	김정*			
6	상주면 양아리	788-1	전	67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은*			
7	상주면 양아리	산310-3	임	99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김익*			
8	상주면 양아리	785	전	79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박준*			
9	상주면 양아리	산305-5	임	6,44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김정*			
10	상주면 양아리	산305-1	임	56,2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박석*			
11	상주면 양아리	산305-1	임	56,23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박선*			
12	상주면 양아리	산314	임	30,44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박영*			
13	상주면 양아리	산315	임	4,264	김해시 봉황동	박경*			
14	상주면 양아리	산317-4	임	1,190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하창*			
15	상주면 양아리	산317-2	임	2,08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하덕*			
16	상주면 양아리	산317-1	임	3,86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하정*			
17	상주면 양아리	산316	임	7,43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박태*			
18	상주면 양아리	산341	임	33,7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성*			

남해군 공고 제2021 - 619호

공시송달 공고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사업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1) 사업 명칭 :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사업 목적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4) 사업 시행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경상남도 상주면 상주리 산325번지 일원
 - 나. 사업내용 : 사면정비 L=1,650m

2. 의견 제출 기간 및 장소

- 1) 의견 제출기간 : 2021. 4. 26. ~ 5. 10. (14일간)
- 2) 의견 제출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 (☎ 055-860-3296)

3.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현황			
		본	지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0인		
1	상주면 상주리	산325		임	20,94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오승*		
2	상주면 상주리	산326	9	도	833	부산광역시 금정구	박진*		
3	상주면 상주리	산326	1	임	6,91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최춘*		
4	상주면 상주리	산327	2	임	8,09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김장*		
5	상주면 상주리	산328	9	임	95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박수*		
6	상주면 상주리	산317		임	10,048	부산광역시 금정구	최상*		
7	상주면 상주리	산317	3	도	5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오태*		
8	상주면 상주리	산312	2	임	18,75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김*		
9	상주면 상주리	산312	1	임	8,67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정춘*		
10	상주면 상주리	산312	1	임	8,676	울산광역시 동구	김경*		
11	상주면 상주리	산312	1	임	8,67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상*		
12	상주면 상주리	산307	4	도	791	부산광역시 남구	김상*		
13	상주면 상주리	산307	4	도	791	부산광역시 동래구	송일*		
14	상주면 상주리	산305		임	18,18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성*		
15	상주면 상주리	산304	1	임	9,907	서울특별시 동작구	석기*		
16	상주면 상주리	산304	1	임	9,907	서울특별시 동작	김기*		
17	상주면 상주리	1998	3	답	203	경상남도 진주시	서종*		
18	상주면 상주리	1998	7	도	19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권평*		
19	상주면 상주리	1998	4	답	909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민을*		
20	상주면 상주리	산302	13	임	21,57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권정*		

남해군 공고 제2021 - 640호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20-11호(2020.1.9.)로 실시계획인가 최종 고시된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설리유원지)사업
 - 명 칭 :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93,1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당초 - (주)소노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최주영, 서준혁
 변경 - (주)소노인테리어 대표이사 최주영, 민병소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변경 없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도시계획(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7. 관계도면 : 실음생략(변경없음)

8. 열람장소 및 기간

-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남해군 공고 제2021 - 644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 12.) 및 시행(2021. 7. 13.) 예정에 따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근거법령 제목수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안 제5조)

-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에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부여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

- 위원회 명칭변경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명칭변경

- 심의 기능 추가

- 법 제25조에 따른 법령위반 및 부정수급자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 여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전화 860-3064, 팩스 860-3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860-30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남해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군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 업무 담당 소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 ③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 ④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64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남 해 군 수

-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1. 4. 30.
- 2. 사유
 - 공인 노후화(마모)로 폐기 한 후 새로 제작하여 재등록
- 3. 등록, 폐기 공인명·인영
 -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설천면장인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설천면
설천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설천면

나. (재)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설천면장인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설천면
설천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등록		설천면

끝.

남해군 공고 제2021 - 655호

남해군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남해군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연휴양림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 1. 명 칭 : 남해군 자연휴양림
- 2. 면 적 : 330,931m²
- 3.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28-1 외 5필지(붙임 필지별 편입 토지조서 참조)
- 4. 공고내용 :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 5. 공고기간 : 2021. 4. 28. ~ 5. 11.
- 6. 이의신청
 - 가. 기 간 : 2021. 4. 28. ~ 5. 11.
 - 나. 접수처 : 경상남도 남해군 환경녹지과 산림휴양팀 (055) 860-3678
- 7.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환경녹지과 산림휴양팀 (055) 860-3678
-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검토하고자 함.

※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검토 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및 고시할 계획이며,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 환경녹지과 산림휴양팀(055-860-367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1. 남해군 자연휴양림 지정예정지 필지별 편입 토지조서 1부.
2. 남해군 자연휴양림 지정예정지 구역도 1부. 끝.

남해군 자연휴양림 지정예정지 필지별 편입 토지조서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다른법령상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28-1	임야	646,612	193,91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문화재(남해장성(기념물 제154호))<문화재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대지포천)<하천법>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28-2	임야	220,165	14,00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29-1	임야	1,268,627	65,03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접도구역<도로법>, 문화재(남해장성(기념물 제154호))<문화재보호법>, 사방지<사방사업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대지포천)<하천법>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29-4	임야	196,860	40,73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30	임야	873	87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31	임야	16,364	16,364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하천구역(대지포천)<하천법>

